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 상정안건 요약

1. 회부 경위

- 의안번호 : 제2721호
- 발의의원 : 김원식 의원 외 5명(유철규, 손인수, 임채성, 이태환, 이재현)
- 발의일자 : 2021. 5. 10.
- 회부일자 : 2021. 5. 11.

2. 제안이유

- 의원 연구 모임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의정활동 증가 상황에 맞추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비가 필요함
-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성요건 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연구모임 구성 시 7명 이내로 한정하던 내용을 개선함(안 제3조)
- 나. 의원의 연구모임 참여를 연 1개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제3항 삭제)

- 다. 연구 모임 등록 제출기한 1월 10일 규정을 삭제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6조)
- 라. 단서 조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 추가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붙임 2)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5. 검토 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모임 구성요건 완화 및 운영에 관한 정비 등 연구모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입법 활동 활성화와 의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주요내용

- 연구모임 구성 요건 완화 및 참여확대(안 제3조)
 - 현재는 연구모임 회원을 7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제한하고, 의원당 1개 연구모임과 참여가 가능하여 새로운 관심 분야의 연구단체가 신설되어도 기존의 연구단체를 탈퇴하지 않는 한 신규 연구단체에서 활동하기 어려움
 -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등록 연구모임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연구모임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더 자유롭고 폭 넓게 하려는 것임
- * (사례)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 경북만 1개 참여로 제한함

○ 등록제출기한 등 변경(안 제6조)

- 현재 연구모임 등록 제출기한(1월 10일) 규정을 삭제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연중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원의 연구단체 신설과 가입이 쉽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연구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연구모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연초 등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임

○ 활동비 지원(안 제8조)

- 현행 조례가 연구활동비 추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없어, 단서 조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규정으로 의의가 있다 할 것임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요건 완화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의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취지와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조표

【붙임 2】 관계법령 빨췌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제3대 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현황

	모임명	대표 의원	회원수	연구내용	비고
'19년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박성수	7명	세종형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 연구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 연구모임	이재현	7명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 연구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손현옥	7명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연구	
'20년	세종시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차성호	7명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 모색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유철규	7명	세종형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과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손인수	7명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연구	
'21년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이영세	7명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을 위한 연구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이순열	7명	자전거와 PM의 도로인프라 개선방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서금택	7명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임채성	7명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규칙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를 “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1월 10일까지”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모임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연구모임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자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 활동비 추가 지원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연구모임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과 교수, 전문가 등을 <u>포함하여</u> 7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후단 신설></p> <p>1. ~ 3. (생략) ② (생략) <u>③ 의원의 연구모임 참여는 연하나의 연구모임으로 한정한다.</u></p> <p>제6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1월 10일까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p> <p>제8조(활동비 지원) 의장은 제6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u>의정운영공통경비</u>에서 연구모임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p>	<p>제3조(구성) ① ----- ----- ----- <u>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6조(등록 등) ① ----- ----- ----- ----- <u>첨부하여</u>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활동비 지원) ① ----- ----- <u>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u> ----- -----. 다만, <u>연구모임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u></p>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연구모임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자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 활동비 추가 지원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모임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본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연구모임 구성 및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 원 식 의원